

##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30.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6일

발 의 자 : 조미수·이주희·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 의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대상을 통제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유공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명시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김윤희 (2680-2508)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포상의 통제 등)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유공기간</u> 1년 미만의 사람</p> <p>2. (생략)</p> <p><u>&lt;신설&gt;</u></p>	<p>제13조(포상의 통제 등) ----- ----- ----- -----.</p> <p>1. <u>수공기간</u> -----</p> <p>2. (현행과 같음)</p> <p>3. <u>광명시의회</u>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u>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u></p>

#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이주희·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립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됨
-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 안건의 제출 시기를 연장하고 유인물의 배부시기를 정함

## 2. 주요내용

- 회의의 안건을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고,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하도록 함(안 제4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 해당 없음

##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고,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회의)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u>24시간전에</u> 간사에게 제출 <u>하여야 한다.</u></p> <p>④ ~ ⑦ (생   략)</p>	<p>제4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2일 전에</u> 간사에게 제출하 <u>고,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u> <u>부한다.</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이주희·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광명시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관리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추구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안 제8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u>회피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u>회피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주희·안성환·  
이형덕·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 규제의 내용, 위원회의 심사의견,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이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간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7조의2(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의 내용</li> <li>2. 위원회의 심사의견</li> <li>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li> <li>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간</li> </ol> <p>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주희·안성환·  
이형덕·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간사 소속 기관이 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범질서의 확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간사 소속기관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소속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의2)
-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간사 소속기관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소속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의2(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의2(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소속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17조의2(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u></p>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6일

발 의 자 : 조미수·이주희

현충열·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김윤호 의원

## 1. 제안이유

-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상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함

## 2. 주요내용

-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안 제5조)
-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함(안 제6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고용환경 개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3. (생략)</p> <p>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고용환경 개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제창록·이주희·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박성민 의원

##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출산축하금 용어정의(안 제2조)
-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안 제3조)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안 제4조)
-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안 제5조)
- 출산축하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1,120백만원 반영 예정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취 : 불임
- 비용추계서 : 불임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

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보건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일규 (2680-2539)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비 용 주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출생아 1인당 출산축하금 70만원 지급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매년 출생아수가 변동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
- 2) 출산율이 2018년 7월 대비 15%이상 감소하나, 추후 인구 유입이 예상됨.
- 3)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 인원은 2019년 7월 말 기준 90%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산축하금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1,12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120,000
출산축하금	1,12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120,000
재원조달	1,12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120,000
시 비	1,12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120,000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주희·안성환·  
이형덕·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회가 이행 촉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자료 제출 또는 이행 촉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이하 “관  
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 ② 시·관계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6. (생략)</p> <p>제6조(위원의 임기) <u>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성실이행 의무) <u>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 </p> <p><u>&lt;신 설&gt;</u></p>	<p>제2조(기능)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u></p> <p><u>7. (현행 제6호와 같음)</u></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u></p> <p><u>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 <u>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u></p> <p><u>② 시·관계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u></p>

# 관계법령발췌서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주희·안성환·이형덕·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액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및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생활임금의 결정 등(안 제10조)
  - 생활임금이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함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산입범위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
-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2.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결정한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생활임금액”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u></p>  <p>3. <u>“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 ----- ----- ----- <u>시장</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u></p> <p>1. <u>생활임금 산입범위</u></p>

<신 설>

<신 설>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체"로 본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주희·이일규·  
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함
-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2. 주요내용

- 제명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조례 제명의 인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만 24세 청년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제4조제1항”을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창업지원과
입 안 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성민 (2680-2536)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u>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4조(지급대상)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제4조제1항</u>----- ----- -----.</p> <p><u>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u></li> <li><u>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u></li> </ol>

#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주희·이형덕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광명시 공수의의 임기와 재위축, 해촉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순회 출장으로 월 3일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공수의의 위축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광명시 공수의 임기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광명시 공수의 해촉 사유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공수의의 순회 출장을 월 3일로 정함(안 제6조)
-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시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함(안 제5조)
- 「광명시 공수의 여비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  
를 해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 중 “있다”를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을”을 “지역을 월 3일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공수의 여비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658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2조(위촉) ----- ----- ----- -----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p>
<p>제4조(해촉)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제4조(해촉)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li> <li>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li> </ol>
<p>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수당) ----- ----- -----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광명시 전 지역을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 ----- 지역을 월 3일 이상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주희·이형덕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여 농수산업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안 제6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u></p> <p><u>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u>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u></p> <p style="margin-left: 2em;"><u>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u></p> <p><u>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u></p> <p><u>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u></p> <p><u>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관 계 법 령 발 칙 서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

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주희·안성환·이형덕  
한주원·현충열·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li> <li>2.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li> </ol>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관 계 법 령 발 칙 서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주희·안성환·이형덕  
한주원·김윤호·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표현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현재 이용실태에 맞게 조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감면 사항을 정비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감면 조항 신설.

## 2. 주요내용

-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표현을 정비 (안 제2조, 6조, 8조, 10조, 15조)
-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대상 추가 (안 제4조, 5조)
- 체육시설 사용시간 현재 이용실태에 따라 조정 (안 제9조)
-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감면 사항 정비 (안 제14조)
- 경기도 문화의 날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안 제14조)
- 위탁관리 단체명 및 위탁기간 정비(안 제22조)
- 사용료 별표 중 비고란에 사용료 추가(별표1, 별표2, 별표6)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련부서 : 경기도 체육과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를 “12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미성년이 아닌”을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으로, “노인”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행사”를 “행사”로 한다.

제5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하며, 광명골프연습장의 경우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를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오전 5시 ~ 오전 8시	오전 6시 ~ 오전 9시
주 간	오전 8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5시
야 간	오후 7시 ~ 오후 11시	오후 5시 ~ 오후 10시

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 및 시립체육시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오전 6시 ~ 오전 8시	오전 7시 ~ 오전 9시
주 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5시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오후 5시 ~ 오후 9시

3. 노온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

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오전 8시 ~ 오후 7시	오전 8시 ~ 오후 6시

5. 소하배수펌프장 안의 야구연습장

구 분	하 계	동 계
사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오전 8시 ~ 오후 9시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부터 별표6까지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보도진
3. 광명시민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4조제1호 중 “국가”를 “전액감면 :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분의 80 감면

- 가. 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시체육회 등록단체의 협회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단, 협회장기는 연간 1회)
- 나.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 다.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 3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 라. 광명시 여성축구단·50대축구단·60대축구단·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0분의 50 감면

- 가.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국가적인 체육행사
- 나.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00분의 30 감면

- 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제1항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광명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으”를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1] 시설전용사용료 및 비고에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별표 2] 연습이용료 및 [별표 6] 골프연습장이용료 비고에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조미수 (2680-658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u>전용료</u>"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 9. (생략)</p> <p>10. "어린이"란 <u>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11.·12. (생략)</p> <p>13. "어른"이란 <u>미성년이 아닌 64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u>노인</u>을 말한다.</p> <p>14. (생략)</p> <p>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p> <p>1.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u>의 행사</p> <p>2. (생략)</p> <p>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u>체육행사</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u>전용사용료</u>"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 9. (현행과 같음)</p> <p>10. "어린이"란 <u>12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11.·12. (현행과 같음)</p> <p>13. "어른"이란 <u>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u>사람</u>을 말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p> <p>1. ----- <u>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시</u>-----</p> <p>2. (현행과 같음)</p> <p>3. ----- <u>행사</u> -----</p>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 6. (생략)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 6. (생략)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제한) -----

1. ~ 5. (현행과 같음)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

1. (현행과 같음)

2.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하며, 광명골프연습장의 경우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오전 5시 ~ 오전 8시	오전 6시 ~ 오전 8시
주 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오전 8시 ~ 오후 5시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1시	오후 5시 ~ 오후 11시

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

3. 노은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

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5시

4. (생 략)

5. 소하배수펌프장 안의 야구연습장

구 분	하 계	동 계
사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7시	오전 8시 ~ 오후 6시

②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설 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사용료, 선전·광고 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골프연습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하되, 그 요금은 별표 1부터 별표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오전 5시 ~ 오전 8시	오전 6시 ~ 오전 9시
주 간	오전 8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5시
야 간	오후 7시 ~ 오후 11시	오후 5시 ~ 오후 10시

2. ----- 체육시설 및 시립체육시설

3. 노은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

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오전 8시 ~ 오후 7시	오전 8시 ~ 오후 6시

4. (현행과 같음)

5. 소하배수펌프장 안의 야구연습장

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오전 8시 ~ 오후 9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부터 별표6까지로 정한다.

6까지와 같다.

③·④ (생략)

제13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보도진
3. 광명시민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② 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입장과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200원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보도진
3. 광명시민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  
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시  
생활체육회 등록단체의 연합회장  
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  
우(단, 연합회장기는 연간 1회)

3.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  
(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4.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축구  
부가 있는 학교 및 대한체육회에

1. 전액감면 : 국가-----  
-----

2. 100분의 80 감면

가. 각급 행정기관장기 또는 광명  
시체육회 등록단체의 협회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  
우(단, 협회장기는 연간 1회)

나.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  
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  
할 경우

다.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  
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  
틀야구단에서 평일 3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라. 광명시 여성축구단·50대축구  
단·60대축구단·70대축구단  
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삭 제>

<삭 제>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5. 광명시 여성축구단·50대축구단  
·60대축구단·70대축구단이 훈련  
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  
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7.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국가적인  
체육행사

8.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  
족, 「5·18 민주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  
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  
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  
관하는 행사

<삭 제>

<삭 제>

<삭 제>

3. 100분의 50 감면

가.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국가  
적인 체육행사

나.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  
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  
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  
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 ①·② (생략)

<신 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기간은 상호간 계약에 따른다.

④ (생략)

4. 100분의 30 감면

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위탁관리) ① -----  
-----  
----- 광명시체육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년 이  
내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시설전용사용료

(단위 : 원)

장 소	시 설 별	사 구 용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시 운 민 장	인 조 잔디구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외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노 온 정 수 장 부 지	다 목 적 운 동 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외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소 하 배 수 펌 프 장	광 명 야 구 장	야 구 경 기	관 내	100,000	130,000	
			관 외	150,000	195,000	
		야 구 경 기 외 사	관 내	200,000	260,000	
			관 외	300,000	390,000	

개 정 안

[별표 1]

시설전용사용료

(단위 : 원)

장 소	시 설 별	사 구 용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시 운 민 장	인 조 잔디구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외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노 온 정 수 장 부 지	다 목 적 운 동 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외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소 하 배 수 펌 프 장	광 명 야 구 장	야 구 경 기	관 내	100,000	130,000	
			관 외	150,000	195,000	
		야 구 경 기 외 사	관 내	200,000	260,000	
			관 외	300,000	390,000	

현행				개정안			
[별표 2] 연습이용료				[별표 2] 연습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및 이용자 구분		수시이용료		월 정기권		
			평일	토·공휴일	개인	단체	
실내경기장	1명 2시간	어른	1,500	1,800	30,000	21,000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700	900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300	1,500	27,000	-	
헬스장	1명 2시간	어른	1,500	1,800	30,000	21,000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700	900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300	1,500	27,000	-	
탁구장	1명 2시간	어른	1,500	1,800	30,000	21,000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700	900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300	1,500	27,000	-	
에어로빅장	1명 2시간	어른	-	-	30,000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	-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	-	27,000	-	
실용프러닝장	수시권	1명 1시간	어른	4,000	4,800	-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2,000	2,400	-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3,600	4,300	-	-
	정기권	1명 1시간 30분	어른	-	-	70,000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	-	3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	-	63,000	-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어른	1,500	1,800	30,000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700	900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300	1,500	27,000	-	
국궁장	1명 2시간	어른	1,000	1,200	20,000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500	600	10,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900	1,000	18,000	-	
테니스장	1명 2시간	어른	1,500	1,800	30,000	-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	700	900	15,000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300	1,500	27,000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li> <li>○ 토·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li> <li>○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li> <li>○ 광명시 거주자 우선</li> <li>○ 이용자 접수기간 : 기존 이용자 매월 1-7일, 신규 이용자 매월 8일-14일</li> <li>○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정하지 않음)</li> <li>○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 「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li> <li>○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li> <li>○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li> <li>○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지할 수 있다.</li> </ul>						

현행

[별표 6]

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이용		이용료						
			남성		여성		부부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정기회원	1개월	오전 (05:30-10:00)	180,000	140,000	150,000	120,000			
		반일 (05:30-14:00)	200,000	160,000	170,000	130,000			
		개장시간 중	220,000	180,000	190,000	150,000	400,000	320,000	
		3개월	개장시간 중	630,000	510,000	540,000	430,000	1,150,000	920,000
	6개월	개장시간 중	1,170,000	950,000	1,000,000	800,000	2,120,000	1,700,000	
	12개월	개장시간 중	1,980,000	1,620,000	1,680,000	1,350,000	3,560,000	2,870,000	
	주중 (월~금) 회원	1개월	05:30-13:00	180,000	140,000	150,000	120,000		
		3개월	05:30-13:00	500,000	400,000	430,000	340,000		
		6개월	05:30-13:00	920,000	760,000	790,000	640,000		
		12개월	05:30-13:00	1,580,000	1,300,000	1,340,000	1,080,000		
쿠폰	1회		60분		16,000		당일		
	15회		회 당 60분		200,000		3개월		
	30회		회 당 60분		370,000		6개월		
이용시간	동절기 (11월~2월)		05 : 30 ~ 22 : 00		※ 쿠폰 - 1회 30분 9,000 - 1회 100분 25,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12개월 12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하절기 (3월~10월)		05 : 30 ~ 22 : 30						
비 고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임직원으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임직원이 일반 연회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하여 남성 900,000, 여성 750,000으로 함.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단, 연 회원은 70분을 배정함.								

개정안

[별표 6]

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이용		이용료						
			남성		여성		부부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광명시 관외 거주자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정기회원	1개월	오전 (05:30-10:00)	180,000	140,000	150,000	120,000			
		반일 (05:30-14:00)	200,000	160,000	170,000	130,000			
		개장시간 중	220,000	180,000	190,000	150,000	400,000	320,000	
	3개월	개장시간 중	630,000	510,000	540,000	430,000	1,150,000	920,000	
	6개월	개장시간 중	1,170,000	950,000	1,000,000	800,000	2,120,000	1,700,000	
	12개월	개장시간 중	1,980,000	1,620,000	1,680,000	1,350,000	3,560,000	2,870,000	
	주중 (월~금) 회원	1개월	05:30-13:00	180,000	140,000	150,000	120,000		
		3개월	05:30-13:00	500,000	400,000	430,000	340,000		
		6개월	05:30-13:00	920,000	760,000	790,000	640,000		
		12개월	05:30-13:00	1,580,000	1,300,000	1,340,000	1,080,000		
쿠폰	1회		60분		16,000		당일		
	15회		회 당 60분		200,000		3개월		
	30회		회 당 60분		370,000		6개월		
이용시간	동절기 (11월~2월)		05 : 30 ~ 22 : 00		※ 쿠폰 - 1회 30분 9,000 - 1회 100분 25,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12개월 12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하절기 (3월~10월)		05 : 30 ~ 22 : 30						
비 고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임직원으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임직원이 일반 연회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하여 남성 900,000, 여성 750,000으로 함.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단, 연 회원은 70분을 배정함.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 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감안 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 2 |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제1장 (위임법위임률)  
상위법령위반 · 불일치 포함

### 조례내용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가.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를 포함한다.)
-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 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 2. 100분의 50 감면

-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 아.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 자.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차.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3. 100분의 30 감면

-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다. <삭제 2015.12.29.>
-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마. <삭제 2017.3.31.>
-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 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사. <삭제 2015.12.29.>
- 아. 셋째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plus)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삭제 2015.4.17.>

## I. 문제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에 대해서도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 체육행사 등과 비교할 때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허용

## II.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활동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

## 관련 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윤호·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 의원

##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항을 자문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5조)
  -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박성민 의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9. 8. 30. ~ 2019. 9. 3.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으로 한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p> <p>1. <u>“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u></p> <p>2. <u>“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 -----.</p> <p>1. <u>“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 <u>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u> ----- -----.</p>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